

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실태 등 특정감사 결과

선제적 예방감사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실태 및 수의계약의 적법성 등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임.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: 2019. 4. 8. ~ 4. 30.(실 감사기간: 17일간)
 - 예비조사: 2019. 4. 8. ~ 4. 12.(5일간)
 - 실지감사: 2019. 4. 15. ~ 4. 30.(12일간)
- 감사대상
 - ① 세입세출외 현금(보증금, 보관금, 잡종금 등 기타) 관리실태
 - 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적법성
 - ③ 계약심사 및 시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
- 감사범위: 2017. 5월 ~ 2018. 12월
- 감사반: 청렴감사실장 외 5명

II 감사결과

- 행정상 조치: 8건(시정 1, 주의 6, 개선 1)
 - 본 처 분: 3건(시정 0, 주의 3, 개선 0)
 - 현지처리: 5건(시정 1, 주의 3, 개선 1)
- 재정상 조치: 없음
- 신분상 조치: 4명(주의)
- 제도개선: 2건
- 수범사례: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(예산절감)
 - 수범자: 주차시설팀 ○○○급 ○○○○

III 감사결과 총평

- 선제적 사전 예방감사를 위한 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실태, ②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③ 계약심사·시공감사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,
- 지방계약법,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, 공단 사규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, 일부직원의 경우 관계법령(지침) 미준수, 잘못된 행정선례의 답습 및 개인판단 착오 등으로 업무처리가 미흡한 사례가 8건 확인되었음.
- 따라서,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 주시고, 계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 市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.

IV 세부 지적사항

I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실태

- ① [현지처분] 퇴직금 정산 업무 소홀: 총무인사팀
 - 前 핸드볼 감독 김○○의 퇴직금 지급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, 퇴직금을 미지급(채무)으로 회계 처리하였음.
- ② [현지처분] 건강보험 미정산: 총무인사팀
 - 개인질병으로 휴직 중 퇴사한 청원경찰 이○○의 건강 보험료 차액 정산금(환급금) 33,800원 및 청원경찰 이○○의 퇴직시 보수월액 신고 차액 발생으로 인한 환수금 23,800원을 각각 환급·환수 조치하지 않았음.

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적법성

- ① **[현지처분]** 사내복지기금 운영 부적정: 총무인사팀
- 2017~18년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법인의 관리·운영사항을 공단 사보 게재,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2018~19년 기금 운영자금 900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○○은행에 2회에 걸쳐 예치하였음.
- ② **[본처분]** 제한입찰 부적정: 시민공원시설팀
- 공사 사업자 선정 시 2개 항목(지역제한+실적제한) 이상 중복으로 과도한 제한을 하였으며, 또한, 동일실적 제한 시 준공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최근 3년으로 제한하여 발주함.

③ 계약심사 및 시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

- ① **[본처분]** 계약심사 감사결과 미이행: 교량시설팀, 장사운영팀
-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 후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, 집행부서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발주함.
- ② **[본처분]** 시공감사 미실시: 도로시설팀
- 부실사업 방지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자재비 포함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은 시공감사 대상이나, 이를 누락하고 준공처리함.
- ③ **[현지처분]** 계약심사 처리결과 통보서 미제출: 교량시설팀, 장사운영팀
- 감사부서 계약심사 결과 통보 후 일부 집행부서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반영여부를 포함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미제출함.
- ④ **[현지처분]** 계약심사 감사결과 보고서 미첨부: 공원관리팀, 시민공원시설팀
- 감사부서의 계약심사 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품의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나, 이를 이행하지 않음.

V 제도 개선사항

① 시공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

시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, 공사준공 전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함으로써, 부실공사 사전 예방(방지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시공감사 지적사항 통보 후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불가
- 공단 내규 상 시공감사 조치결과 제출 규정 부재(계약일상감사만 존재)

* 감사규정시행내규

제11조(보고 및 처리)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지적대상사업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및 제22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집행결과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개선사항(대책)

- 시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공사 준공 15일 이내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토록 하고, 관련내규 내 명문화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 - 「감사규정시행내규」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1 조(보고 및 처리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지적대상사업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및 제22호 서식에 의한 <u>일상감사 집행결과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 11 조(보고 및 처리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지적대상사업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및 제22호 서식에 의한 <u>일상감사 집행결과보고서 및 공사 준공 15일 이내에 시공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②

계약심사 집행결과 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

계약심사 완료 후 “계약심사 집행결과 보고서” 제출 시 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제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계약심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여부만을 기재하여 “계약심사 집행결과 보고서” 제출함에 따라 설계서 반영여부 확인 불가
- 실제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실지감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

□ 개선사항(대책)

- “계약심사 집행결과 보고서” 제출 시 조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, 사전 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

VI 수범사례

□ 대상건수: 1건

□ 수범사례 현황

제 목	수범요지	수범직원		
		소속	직급	성명
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(예산절감)	23개소 공영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4,882천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어 외주용역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, 2019년도 1/4분기 구간 유지관리 결과를 분석 후 자체 기술력 및 보유장비(부품) 등을 활용하여 직영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, 예산절감 효과를 이끌어 냈으며, 이에 따라, 절감된 예산을 주차관리처 필수 사업인 「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 사업」로 전환함으로써,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효과를 이끌어냄.	주차 시설팀	○○ ○급	○○○

VII 조치계획

□ 행정상 조치

- 본 처분 3건 중 시정이 가능한 건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, 주의사항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주의 촉구 및 직무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.
 -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붙임 처분 요구서에 의하여 처리
 - ※ 향후 유사반복 지적사례 적발시 **가중처벌**(자체감사 중점 확인)
- 경미한 사항 5건은 **현지조치**

□ 재정상 조치: 없음

□ 신분상 조치

- 문책대상자 4명(주의) 문책 조치
 - 주의대상자는 앞으로 업무를 성실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소속부서에 통보 → 부서장이 주의 촉구 및 교부

□ 제도 개선사항 2건

- ① 시공감사 후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: 내규 개정 후 시행[별도보고]
- ② 계약심사 집행결과 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: '19.06.01.부 시행

- 붙임
1. 처분요구서 일람표
 2. 문책자조서
 3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
 4. 수범사례
 5. 시공감사 조치결과 보고서(안). 끝.